

제2548호
2017. 11. 08.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편집인: 공 보 실 장 류 용 결
전화: 3396-4965
(<http://www.junggu.seoul.kr>)

선	기관의장
람	

구 보

- **고 시**
제2017-102호 :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2
제2017-103호 :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3
제2017-104호 : 서소문구역 제8-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4
- **공 고**
제2017-776호 :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7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65 / FAX.(02)3396-9024
- 구보는 수시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												
람												



고 시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7-102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우리구 신축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새로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08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기준
		도 로 명 고시일	도 로 명 부여기준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36-42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1길 38-9	2017.11.08	다산로31길의 기초번호로 부여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1	서울특별시 중구 서애로 24-10	2010.06.22	다산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
		2017.11.08	서애로의 기초번호로 부여
		2010.05.26	유성룡선생의 호를 인용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4)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7-103호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우리구 도로명주소 폐지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08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연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 사유
1	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21길 75	2017.11.08	건물말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4)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서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7-104호

서소문구역 제8-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1. 건설부고시 제368호(1973.9.6.)로 재개발구역 지정 및 건설부고시 제428호(1978.12.29.)로 사업 계획 결정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591호(1984.10.10.)로 사업계획변경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79호(2013.6.1.),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7-55호(2017.7.20.)로 도시환경정비구역(정비 계획) 변경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4-21호(2014.3.12.)로 사업시행인가,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4-90호(2014.11.5.)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되었다가,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7-84호(2017.10.11.)로 공사완료 고시된 우리구 서소문동 120-13 일대 서소문구역 제8-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생과에 비치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11월 8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서소문구역 제8-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120-13번지 일대

다. 시행면적 : 변경전 - 1,199.6㎡(대지 977.9㎡, 정비기반시설 221.7㎡)
 변경후 - 1,191.8㎡(대지 968.4㎡, 정비기반시설 223.4㎡)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구 분	성 명	주 소	비고
변경전	(주)센트럴디벨롭먼트, 상진공영(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길 36	
변경후	(주)센트럴디벨롭먼트, 에나에스테이트(주)		

마.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 : 2017년 11월 8일

바.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의 요지

1)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구분	대지면적 (㎡)	건축면적 (㎡)	건폐율 (%)	연면적 (㎡)	용적률 (%)	층수 (지상/지하)	높이 (m)	주용도	비고
당초	977.9	584.4	59.76	14,233.40	1,099.70	23/5	99.8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변경	968.4	584.43	60.35	14,134.90	1,109.58	23/5	99.8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확정측량 결과반영

2)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가) 분양대상자 및 분양면적

구분	분양대상자			분양예정의 대지 및 건물			비고
	성명	주소	지분율 (%)	토지 (㎡)	건물 (㎡)	용도	
당초	(주)센트럴 디벨롭먼트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길 36	35.31	356.41	5,295.99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상진공영(주)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75	7.93				
변경	(주)센트럴 디벨롭먼트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길 36	39.61	300.45	4,816.74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에나에스 테이트(주)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0	3.63				

나) 체비지 시설

당 초	변 경
토지 621.49㎡, 건물 8,937.41㎡	토지 667.95㎡, 건물 9,318.16㎡

다) 보류지 시설 : 해당없음(변경없음)

3)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변경)

가)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 조서(행정청에 무상귀속)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m ²)	편입 면적 (m ²)	지번	지목	면적(m ²)	
도로 (중로1-201)	서소문동 58-50	대	584.7	209.5	서소문동 140	도로	209.5	
도로 (중로2-192)	서소문동 120-31	대	4.3	4.3	서소문동 139	도로	13.9	
	서소문동 120-40	대	7.9	7.9				
	소계			12.2			13.9	
계	3필지			221.7	2필지		223.4	증)1.7 m ²

나)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 해당없음(변경없음)

사. 관계서류 : 생략(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생과 비치서류와 같음)

공 고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7-776호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자동차 소유자가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 요청서를 제출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규정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을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08일

중 구 청 장

- 1. **공고의 명칭**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정지 공고
- 2. **공 고 기 간** : 2017. 11. 08. ~ 2017. 11. 22.
- 3. **공 고 대 상**
 - 자동차등록번호 : 서울45모48**외 1대
 - 소 유 자 명 : 명**외1대
 - 운행정지 명령일자 : 2017. 10. 01. ~ 10. 31.
 - 운행정지 사유 : 소유자 요청

4.공 고 내 용

○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작권으로 말소 가능하고, 무등록 자동차 운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중구청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02-3396-623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 행 정 지 상 태	자동차 등록번호	소유자명	소유자 등록번호	소유자주소	사용본거지주소	불법운행정지상세사유	등록일
등 록	서울45모 48**	명**	420813- 1*****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 **동 ****호(신당동, 남산타운아파트)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 **동 ****호(신당동, 남산타운아파트)	차량명의를 빌려준후 이전서류 다 해주었는데 지 금까지 이전을 안해가고, 불법운행하고 있습니다	2017.10.19
등 록	70하11* *	(주)**렌트 카	110111- 2*****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 지하1층(신당동, 송죽빌딩)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 지하1층(신당동, 송죽빌딩)	장기렌트임차인은 현재 5개월 렌트료 미납중인 상태, 연락두절상태, 계약서 상 30일 연체시 계 약은 자동해지되는 조항 몇개월째 연락도 안되 고 차량반납도 거부중인 상태입니다.	2017.10.17